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신 설>	**부 칙 (2025. 6. 24.)** 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	- 부칙 신설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[1)2)]
A2	벤처기업	일반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
A3	혁신기업	일반	-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(중략) <신 설>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.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유효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유효함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[1)2)]
A2	벤처기업	일반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
A3	혁신기업	일반	-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(중략) -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신용평가기관(자체평가 은행 포함)이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(TCB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중소기업(기술등급(T) 4등급 이상)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주된 업종의 기준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름
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
- 법령 제명 변경
- 의미 명확화
- 선정기준 추가
- 의미 명확화
- 유효기간 없는 인증서 효력 인정 기한 삭제

<별표1 – 부표1>

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

업종별	대상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 : 10차 개정)		비고
음식료품제조업	104 10742 10743 10792	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3	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	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11 2225 2229	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폴리스티렌 발포,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,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22	일반도자기 제조업	

<별표1 – 부표1>

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

업종별 구분	분류명(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)		비고
음식료품제조업	104 10832 10833 10892	동·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3	비료, 농약 및 살균, 살충제 제조업	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11 2225 2229	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22	비내화 일반도자기 제조업	

- 별표 양식 일원화
- 분류명 변경
- 업종 코드 변경
- 분류명 변경
- 분류명 변경
- 분류명 변경

<별표1 - 부표2>

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

업 종 별	대상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 : 10차 개정)		비고
전자부품 제조업	28111	전동기 제조업 중 가전용 모터 제조업	
금형산업	29294	주형 및 금형제조업	
자동차부품 제조업	303	자동차부품 제조업	
정보통신업	5822	시스템, 응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	
차세대배터리 제조업	28202	축전지 제조업	

<별표1 - 부표2>

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

업종별 구분	분류명(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)		비고
전자부품 제조업	28111	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	
금형산업	29293	주형 및 금형 제조업	
자동차부품 제조업	303	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	
정보통신업	5822	시스템·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차세대배터리 제조업	28202 28209	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	

- 별표 양식 일원화
- 분류명 변경
- 업종 코드 변경
- 분류명 변경
- 분류명 변경
- 업종 세분화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비고
금융 및 보험업	65	보험 및 연금업	
<신 설>			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

업종별 구분	분류명(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)		비고
금융 및 보험업	65	보험업	
행정업	846	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	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주된 업종의 기준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름

- 별표 양식 일원화
- 분류명 변경
- 분류명 신설
- 의미 명확화
- 의미 명확화